

제288회 임시회
2010. 3. 23(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3. 23.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2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3.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1. 제안이유

- 지난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 청주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일부 지역선거구가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이 감안되어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

2.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 (현행과 같음)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별표 2)

○ 청주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시의회의원 선거구역 재획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도의원)
	선거구역	의원수	선거구역	의원수	
청 주 시 “라”선거구	분평동, 수곡1동, 수곡2동	3	모충동, 사직1동, 사직2동, 수곡1동, 수곡2동	3	청주시 제4선거구
청 주 시 “마”선거구	모충동,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2	분평동,산남동	2	청주시 제5선거구
청 주 시 “바”선거구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2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2	청주시 제6선거구

※ 타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가.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대한민국 국회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2010.3.2) 개정 의결하고, 3. 12일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

▶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정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 채택 (2010. 2. 4)
- 국회 본회의 의결(2010. 3. 2)

충청북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 여성후보자 추천 강제조항 신설

- 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 1명씩 추천(도의원 및 시원)

※ 정당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1/2에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

-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해당지역 : 전국 9개 시군구(도내는 청주시 도의원 4·5·6선거구 포함)

□ 조례에 반영할 사항

-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한 청주시 도의원 4·5·6선거구내에서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임.

도의원 선거구명	당 초			변 경			
	선거구역	인구수 (의원평균)	기초 의원	선거구역	인구수 (의원평균)	기초 의원	인구 편차
청 주 시 제4선거구	분평동,수곡1동, 수곡2동	73,768 (24,589)	3	모충동,사직1동, 사직2동,수곡1동, 수곡2동	73,293 (24,431)	3	87%
청 주 시 제5선거구	모충동,사직1동, 사직2동,사창동	54,158 (27,079)	2	분평동,산남동	65,919 (32,960)	2	117%
청 주 시 제6선거구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68,862 (34,431)	2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57,576 (28,788)	2	102%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2010년 3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주시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재확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확정하는 규정과 선거권 평등에 부합하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60%내에서 지역구를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확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2010년 3월 24일까지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다만, 선거구역에 대한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79호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1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난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 청주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일부 지역선거구가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이 감안되어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

2.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현행과 같음)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별표 2)
- 청주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시의회의원 선거구역 재획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도의원)
	선거구역	의원수	선거구역	의원수	
청 주 시 “라”선거구	분평동, 수곡1동, 수곡2동	3	모충동, 사당동, 사창동, 수당동, 수당동	3	청주시 제4선거구
청 주 시 “마”선거구	모충동, 사당동, 사당동, 사창동	2	분평동, 산남동	2	청주시 제5선거구
청 주 시 “바”선거구	성화개산죽림동, 산남동	2	사창동, 성화개산죽림동	2	청주시 제6선거구

※ 타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관련법규 : 붙임

-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부칙 제2조

충

충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의 의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충청북도	합계	114	46개 선거구	154
청주시	소계	23	9개 선거구	30
	청주시 “가”선거구	3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5
	청주시 “나”선거구	3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5
	청주시 “다”선거구	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3
	청주시 “라”선거구	3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5
	청주시 “마”선거구	2	분평동, 산남동	2
	청주시 “바”선거구	2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2
	청주시 “사”선거구	2	복대제1동, 복대제2동	2
	청주시 “아”선거구	3	가경동, 강서제1동	2
	청주시 “자”선거구	2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4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충주시	소계	17	7개 선거구	25
	충주시 “가”선거구	2	양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4
	충주시 “나”선거구	2	주덕읍, 이류면, 살미면, 수안보면	4
	충주시 “다”선거구	3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4
	충주시 “라”선거구	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5
	충주시 “마”선거구	2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2
	충주시 “바”선거구	2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3
	충주시 “사”선거구	4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 2동	3
제천시	소계	11	5개 선거구	17
	제천시 “가”선거구	2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3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2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서부·영천동	3
	제천시 “라”선거구	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6
	제천시 “마”선거구	3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3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청원군	소계	10	4개 선거구	14
	청원군 “가”선거구	2	낭성면, 미월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5
	청원군 “나”선거구	3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5
	청원군 “다”선거구	2	내수읍, 북이면	2
	청원군 “라”선거구	3	오창읍, 옥산면	2
보은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보은군 “가”선거구	2	보은읍	1
	보은군 “나”선거구	2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4
	보은군 “다”선거구	3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6
옥천군	소계	7	3개 선거구	9
	옥천군 “가”선거구	3	옥천읍	1
	옥천군 “나”선거구	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4
	옥천군 “다”선거구	2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4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영동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영동군 “가”선거구	3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3
	영동군 “나”선거구	2	용산면, 심천면, 양산면	3
	영동군 “다”선거구	2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5
증평군	소계	6	2개 선거구	2
	증평군 “가”선거구	4	증평읍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제외)	1
	증평군 “나”선거구	2	도안면 (증평읍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포함)	1
진천군	소계	6	2개 선거구	7
	진천군 “가”선거구	3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3
	진천군 “나”선거구	3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4
괴산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괴산군 “가”선거구	3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문광면	4
	괴산군 “나”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4
	괴산군 “다”선거구	2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3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별 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음성군	소계	7	3개 선거구	9
	음성군 “가”선거구	3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4
	음성군 “나”선거구	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3
	음성군 “다”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2
단양군	소계	6	2개 선거구	8
	단양군 “가”선거구	3	단양읍, 대강면, 적성면, 단성면	4
	단양군 “나”선거구	3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4

관련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생략”(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 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생략(시·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개정법률 】

부 칙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도는 그 조정을 위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 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4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충청북도의회의원란 중 청주시제4선거구부터 청주시제6선거구까지의 선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청 주 시 제4선거구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청 주 시 제5선거구	분평동, 산남동
청 주 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공직선거법시행령 】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을 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는 자치구·시·군을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김해시·거창군”으로 정함